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안 번호	19
----------	----

제안년월일 : 2001. 6. 5
제안자 : 이상은 의원외 6인

1. 주 문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사하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과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제9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에서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 7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하고자 함.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하구청장이 제출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심사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예산 운용을 유도하고 정확한 재정수요 및 수입예측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도모코자 함.

3. 주요내용

- 가. 구성위원정수 : 7명
- 나. 위원선임 : 각 상임위원회별 배정위원을 추천 받아 본회의 의결로 선임
- 다. 상임위원회별 위원배정 : 총무사회위원회 3명, 도시산업위원회 4명
- 라. 활동기간 :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93회 임시회 및 제94회 제1차 정례회)

4. 관계법령

- 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 나.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